

2025년도 광주광역시 지역특화 프로젝트 『레전드 50+』 2.0 참여기업 선정계획 공고 (주축산업)

지역중소기업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및 광주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「지역특화 프로젝트 『레전드 50+』2.0 참여기업 선정계획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지역중소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.

2024년 11월 06일

광주광역시장, (재)광주테크노파크원장

1 프로젝트 개요

- (프로젝트명) 주축산업 중심 광주 선도기업 RE-innovation
- (프로젝트 기간) '25년~'27년(3년)
- (프로젝트 내용) 주축산업 대상 지역선도기업 육성

| 분야 | 주요내용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주축산업 (스마트홈, 생체의료소재부품) | 광주 소재 주축산업(스마트홈, 생체의료소재부품) 첨단산업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혁신 성장 생태계 조성 및 지역 거점 선도 기업 육성 |

2 참여기업 선정

- (지원자격) 기본요소 + 특성화지표 중 1개 이상 해당기업 限

| 구분 | | 주요내용 |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|--|
| 기본요소 (필수) |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| - (스마트홈)25억 이상 - (생체의료)9억 이상 | |
| | 소재지 | - 본사 또는 주사업장 광주 소재 | |
| | 산업 | - 스마트 홈, 생체의료소재부품산업 연관 업종 | |
| 특성화 지표 | 성장성 | 매출액증가율 (CAGR) -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증가율 5% 이상 고용 증가율(CAGR) - 최근 3년 평균 고용 증가율 3% 이상 | |
| | 혁신성 | R&D투자 | -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대비 R&D투자비중 1% 이상 |
| | | 기술혁신 | -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및 최근 3년 평균 특허 출원 및 등록 3건 이상 |

- (선정규모) 30개사 내외
- (지원내용) '참여기업'으로 선정된 기업은 향후 프로젝트 지원사업 합동공고를 통해 진행될 '프로젝트 지원사업(참여기업 전용)'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 부여

< 2025년 광주광역시 「주축산업」 프로젝트 지원예정 사업 현황 >

| 구 분 | 지원분야 | 지원사업명 | 지원내용 (※ 세부내용 별첨1 참조) | 2025년 지원규모(안)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|
| 중소벤처 기업부 | 컨설팅 |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| - (기술지원) 주축 산업 분야 핵심 기술지원 * 시제품 제작, 시스템 및 시설구축, 기술이전 및 지재권 획득, 제품 시험인증 등 - (컨설팅) 기술사업화 전략수립 및 제조경 영혁신 추진전략 컨설팅 등 - (마케팅) 시장선점 준비를 위한 디자인 개선, 브랜드 지원, 홍보 지원 등 | 2억원 |
| | 수출지원 | 수출바우처 | - 글로벌 시장진출을 위한 디자인 개발, 통번역, 홍보, 바이어 발굴, 전시화행사 참가 등 판로개 척 지원 | 0.8억원 |
| | 정책자금 | 중소기업 정책자금(융자) | -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, 개발기술 및 보유 특허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정책자금 융자지원 | 20억원 |
| | 제조혁신 | 스마트공장 | - 제조 현장 내 첨단기술 도입 및 양산체계 구축을 위한 스마트공장 솔루션(SW), 연동 자동화장비·제어기·센서 등 구축지원 | 2.3억원 |
| | 사업화 | 지역주력산업 육성(기업지원) | - 지역내 협업 기업에 자율 기업지원프로그램 지원(기술지원, 사업화지원 등) | 3.4억원 |
| | 인력 |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 | - 신진,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 지원으로 최대 3년간 연봉의 50% 지원 | 1.4억원 |
| | 보증 | 기술보증기금 | - 기술성·사업성 등 미래가치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보증서를 발급하여, 신기술사업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 | 11.1억원 |
| | 소 계 | | | |

1) 기업당 지원금액은 및 기업부담금 사업별 상이 : 별첨1 참조

○ (선정기준) 참여기업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

- (평가방법) 신청기업의 신청자격 사전검토 → 선정평가(서면심사)

- (사전검토) 신청서류 등 제출된 자료에 근거하여 참여기업의 신청 자격요건 검토
- (선정평가) 외부 전문가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한 참여기업 선정(서면심사)

- (평가항목)

* 선정평가시, 신청기업 K-TOP(KIBO Technology-rating Open Platform) 결과 참고

| 구분 | 평가항목 | 평가지표 | 배점 | 비고 |
|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|
| 공통지표 (80점) | 프로젝트 부합성 | · 프로젝트 추진목표 및 전략과의 부합성 | 10 | 비계량 |
| | | · 프로젝트 지원대상 및 내용과의 부합성 | 10 | |
| | 참여(지원) 필요성 | · 프로젝트 참여(지원)에 대한 필요성 및 시급성 | 10 | |
| | | · 프로젝트 참여(지원)에 대한 적극성 및 참여의지 | 10 | |
| | 목표 및 계획 수립의 적절성 | · 신청기업의 수행목표 수립의 적절성 | 10 | |
| | | · 신청기업의 연차별 수행계획 및 내용의 적절성 | 15 | |
| 신청기업의 역량 | · 신청기업의 사업화 등 지원프로그램 수행 역량 (대표자/책임자, 주생산품/보유기술, 재무상태 등) | 15 | | |
| 지역 자율지표 (20점) | 신청기업 성장성 | · 최근 3년 평균 매출/고용/영업이익 증가율 | 10 | 계량* |
| | 신청기업 혁신성 | · 최근 3년 평균 R&D 투자비율, 특허 출원·등록 건수 | 10 | 계량* |
| 우대가점 (2점) | 뿌리산업 발전 촉진 | · '뿌리기술 전문기업'으로 지정 기업 | 2 | |
| 배점 합계 | | | 102 | - |

* 계량 지표의 구간별 세부 배점 기준은 별첨4 참조

3 유의사항

○ (중복참여 불가) 본 프로젝트 외에 역내외 “지역특화 프로젝트 『레전드 50+』” 참여기업 선정공고에 중복으로 참여 불가 (1개 프로젝트만 참여 가능)

* 중복지원을 한 경우, 사전검토 및 선정평가에서 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되거나, 또는 선정 이후라도 참여기업 선정취소 처리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

○ (신청자격 요건)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

| 구 분 | | 신청자격 요건 |
|-----|---|--|
| 공통 | 1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「지역중소기업법」 상의 지역중소기업 (중소기업¹⁾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²⁾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)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2) 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* 단, 신청기업의 수요가 '스마트 제조혁신 지원사업(스마트공장)'에만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견기업도 가능 |
| | 2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사업장소재지가 신청 프로젝트 해당 시·도에 소재하는 기업 |
| 개별 | 3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프로젝트의 목적 및 내용, 대상 산업군에 부합하는 기업 * 수행계획서 상에 지역 주력산업과 관련된 과제(주제), 계획, 목표 등을 반드시 기재할 것 (별첨 5참조) |
| | 4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그 외 지원사업별 신청자격 요건에 부합하는 기업 (선택한 지원사업에 한함) * (별첨2) 지원사업별 신청자격 요건 참조 |

○ (신청제외 대상) 다음 사항 중 1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

| 구 분 | | 신청제외 대상 |
|-----|---|---|
| 공통 | 1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휴·폐업 중인 기업 |
| | 2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또는 기업 |
| | 3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한국신용정보원의 「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」에 따라 연체, 대위변제·대지급, 부도, 관련인 금융질서문란, 회생·파산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|
| | 4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「민사집행법」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, 신용정보집중기관(은행연합회 등) 또는 금융기관에 의해 채무불이행자(체불사업자 포함)로 등록되거나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기업 |
| | 5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임직원의 횡령·배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, 그 밖의 허위 및 부정한 방법(제3자 부당개입 등)으로 신청한 자 또는 기업 |
| | 6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의무사항(보고서/성과실적 제출, 정산금/환수금 납부 등)을 불이행하거나, 각종 법령 위반 (사업비 목적 외 사용 등)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, 정부지원사업, 지역산업육성사업 등에서 제재 중인 기업 |
| | 7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기업의 부도, 부채비율이 1,000% 이상 또는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기업 |
| 개별 | 8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그 외 지원사업별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(선택한 지원사업에 한함) * (별첨3) 지원사업별 지원제외 대상 참조 |

○ (기타사항)

- '프로젝트 참여기업'으로 선정된 기업은 '25년~'27년까지 중기부 및 지자체의 프로젝트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나, 각 지원사업의 신청기준(업력, 업종, 결격사유 등)에 따라 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
-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제출서류의 사실 확인을 위한 추가 증빙서류를 신청기업에 요청하거나 참여기업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
- 선정평가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경우, 선정과정에서 배제되거나 선정 이후에도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

4 추진절차 및 일정

○ 참여기업 모집설명회 : 2024. 11. 14.(목) 14:00, 광주TP 본부동 2층 대회의실

* 모집설명회 일시 및 시간, 장소는 추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○ 참여기업 선정절차 및 일정(안)

| 참여기업 모집공고 | 참여기업 신청·접수 | 참여기업 심사/선정 | 참여기업 선정확정 | 지원사업 합동공고 | 지원기업 심사/선정 | 프로젝트 지원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광주TP 홈페이지 | 이메일/ 방문접수 | 사전검토/ 선정평가 | 지역중소기업 지원협의회 | 중기부 사업(공동) | 사업별 심사·선정 | 사업별 지원 |
| 11.06(수) | ~11.27(수) | ~12.11(금) | ~12.18(수) | 12월 | '25.2월 | '25.3월~ |

※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5 신청기간 및 방법

- (공고기간) 2024. 11. 6.(수) ~ 11. 27.(수)
- (접수기간) 2024. 11. 20.(수) ~ 11. 27.(수) 17:00 까지
- (신청방법) 이메일 접수(온라인) 또는 방문접수(오프라인)
- (신청·접수처)

| 이메일 접수(온라인) | | | |
|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소 속 | 담당자명 | E-Mail | 연락처 |
| (재)광주테크노파크 기업육성팀 | 이윤향 선임 | lyh88@gjtp.or.kr | 062-602-7226 |
| 방문접수(오프라인) | | | |
| (61008)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333 (재)광주테크노파크 본부동 1층 기업육성팀 | | | |

- (신청서 제공) 참여기업 신청서 등 제출서류는 첨부된 지역특화 프로젝트 『레전드 50+』 관리지침 별지서식 참조

| 구분 | 제출서류 | 서식여부 | 비고 |
|----|--|------|-----|
| 1 | 지역특화 프로젝트 『레전드 50+』 신청기업 자가진단표 1부 | 붙임1 | 필수 |
| 2 | 지역특화 프로젝트 『레전드 50+』 참여기업 신청서 1부 | 붙임2 | 필수 |
| 3 | 지역특화 프로젝트 『레전드 50+』 참여기업 수행계획서 1부 | 붙임3 | 필수 |
| 4 | 사업자등록증 1부 * (광주광역시 본사기업이 아닌 경우)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공장등록증 추가 제출 | - | 필수 |
| 5 | 국세 및 지방세 납부증명서 각 1부 | - | 필수 |
| 6 | 연도별(21~'23년) 표준재무제표증명원 각 1부 | - | 필수 |
| 7 | 연도별(21~'23년)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명부 각 1부 | - | 필수 |
| 8 | 기업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| 붙임4 | 필수 |
| 9 |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및 청렴서약서 | 붙임5 | 필수 |
| 10 | K-TOP Tech-Index 표준양식 | 붙임6 | 필수 |
| 11 | 신청기업현황조사표 | 붙임7 | 필수 |
| 12 | 연도별(21~'23년) 수출실적, 특허 등록(또는 출원), R&D 투자비율 관련 증빙 | - | 해당시 |

⑥ **관련법규** (※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법령 및 규정을 적용)

- (지원근거)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 촉진 등에 관한 법률
- (관련규정) 지역특화 프로젝트 『레전드 50+』 관리지침

⑦ **문의처**

- 프로젝트 및 참여기업 선정 관련 안내

| 구분 | 담당기관(부서) | | 연락처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「주축산업」 프로젝트 총괄 | 총괄 | 광주광역시청 (창업진흥과) | 062-613-3863 |
| 「주축산업」 프로젝트 지원 | 주관 기관 | (재)광주테크노파크 (기업육성팀) | 062-602-7226 |

- 별첨
1. 프로젝트 세부지원 내용 및 참여기업 우대사항
 2. 프로젝트 지원사업별 신청자격 요건
 3. 프로젝트 지원사업별 지원제외 대상
 4. 참여기업 평가항목(계량지표) 세부 배점기준

별첨1**프로젝트 세부지원 내용 및 참여기업 우대사항****사업1****중소기업 혁신바우처 (컨설팅^{주요}, 기술지원, 마케팅)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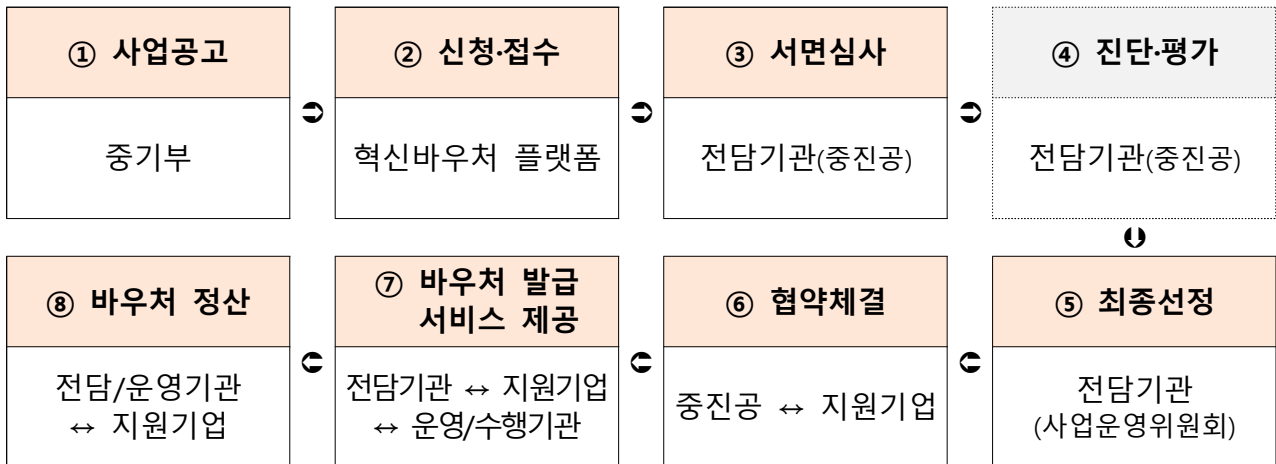
- (사업목적) 성장 가능성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단을 통한 기업 특성별 맞춤형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
- (지원규모) '25년 약 2억원* (프로젝트 투입예산 기준)
 - * 일반형 바우처 : 지역성장 바우처
- (지원대상)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
 - * 내역별 세부 신청자격 상이
- (지원내용) 수행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(컨설팅, 기술지원, 마케팅)를 지원기업(수요기업)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지원
 - * 내역별 세부 지원내용 상이

< 내역별 세부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>

| 내역명 |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|
|------------------|--|
| 일반바우처 (지역자율형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신청자격) 제조업 영위 소기업(3년 평균 매출액 120억원 이하) → <완화> 제조업 영위 중소기업(매출액 제한 조건 없음, 보조율만 차등)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)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[별표1] 중소기업 기준의 분류기호 "C" 업종 적용 2)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[별표3] 소기업 기준의 분류기호 "C" 업종 적용 3)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(평균매출액등의 산정) 적용 • (지원내용) 제조업 중소기업 혁신성장을 위한 일반바우처 3개 분야(컨설팅, 기술지원, 마케팅), 10개 프로그램의 바우처 및 융복합컨설팅 지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신청사항 : 일반바우처는 분야별 1개씩, 최대 3개 프로그램 신청 가능 • (지원규모) 기업당 최대 50백만원(정부지원 보조율 40~85%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3년 평균 매출액 : 3억원 이하(85%), 3~10억원 이하(75%), 10~50억원 이하(65%), 50~120억원 이하(45%), 120억원 이상(40%) |

- (추진체계) 전담기관(중진공), 운영기관*, 수행기관(서비스 제공기관)
 - * (운영기관) '25년 별도 선정 예정

□ (추진절차)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주요 추진절차(기존절차)



- (신청·접수) 중진공 혁신바우처 플랫폼(www.mssmiv.com)
- (서면심사) 신청자격 요건, 지원(제외)대상 여부, 사업추진 적정성 등 심사 후 고득점 순으로 현장평가 대상 선정
- (진단·평가) 혁신역량진단 및 현장평가 실시
- (최종선정) 중기부·중진공·외부전문가 구성의 '사업운영위원회'를 통해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분야별 최종 지원기업(참여기업) 선정

※ 프로젝트 참여기업 우대사항

- ☞ 프로젝트 전용예산 : 참여기업 간 제한경쟁을 통한 지원기업 우선 선정
- ☞ 신청자격 요건 완화 : 참여기업이 제조업 영위 중소기업이면 가능
 - * (기존) 제조업 영위 소기업(3년 평균 매출액 120억원 이하) → (우대) 제조업 영위 중소기업(매출액 제한 조건 없음)
- ☞ 선정절차 간소화 : 참여기업이 신청 시 '④진단·평가' 단계의 현장평가 면제

사업2

수출바우처 (수출지원 /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)

- (사업목적) 내수·수출 중소기업 규모별 맞춤형 해외마케팅 서비스 지원을 통해 수출액 확대 및 수출 선도기업 육성
- (지원규모) '25년 약 0.8억원(프로젝트 투입예산 기준)
- (지원대상)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, 수출규모별 지원대상을 구분하고, 직전년도 매출규모에 따라 보조율 차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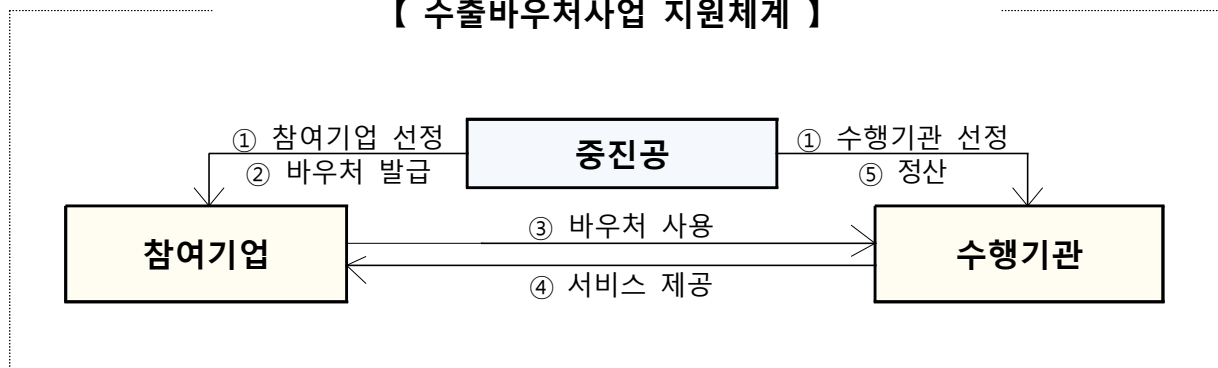
【 세부 지원대상 및 한도 】

(단위 : 백만원)

| 지원트랙 | 지원 대상 | 지원한도 | 국고보조율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|
| 내수기업 | 수출액 '0~1천불 미만' | 30 | (매출액 기준) 100억원 미만 : 70% 100~300억원 : 60% 300억원 이상 : 50% |
| 수출초보 | 수출액 '1천~10만불 미만' | 30 | |
| 수출유망 | 수출액 '10~100만불 미만' | 40 | |
| 수출성장 | 수출액 '100~500만불 미만' | 70 | |
| 수출강소 | 수출액 '500만불 이상' | 100 | |

- (지원내용) 디자인 개발, 홍보, 바이어 발굴, 전시회, 인증 등 해외 진출 시 필요한 마케팅 서비스를 패키지식(수출바우처)으로 지원
 - 선정기업에 “수출바우처” 발급 → 기업은 바우처 한도 내에서 지원 서비스와 수행기관을 자유롭게 선택, 수행 → 소요비용 정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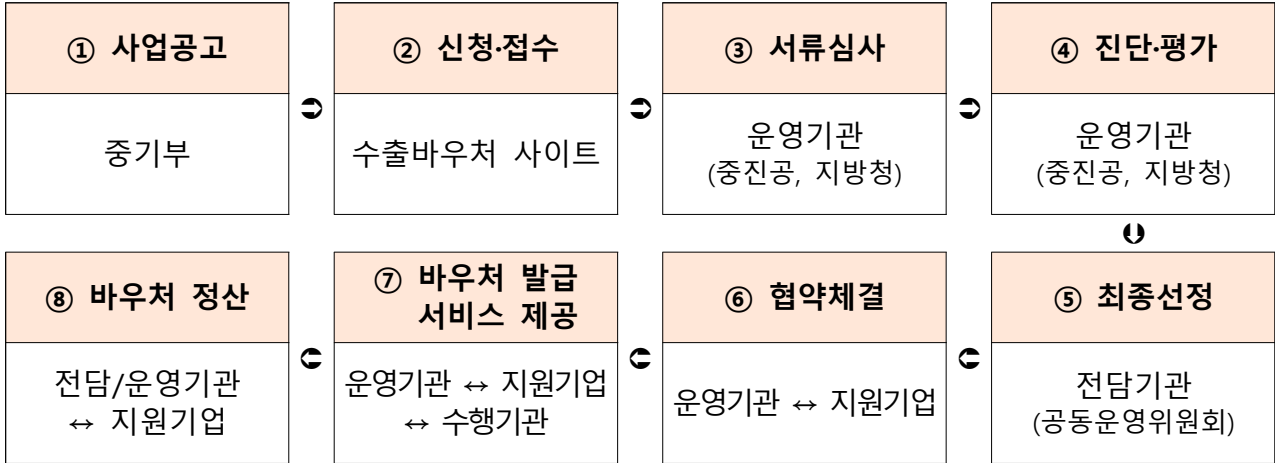
【 수출바우처사업 지원체계 】



□ (추진체계) 전담기관(중진공), 운영기관*, 수행기관(서비스 제공기관)

* (운영기관) 중진공, 지방청

□ (추진절차) 수출바우처 지원사업 주요 추진절차



- (신청·접수) 중진공 수출바우처 사이트(www.exportvoucher.com)
- (서류심사) 신청자격 요건, 지원(제외)대상 여부 등 신청자격 심사 진행 후 현장평가 대상 선정
- (진단·평가) 수출역량(수출성장단계) 및 업종(제조업 및 서비스업)에 따른 현장진단·평가 실시
- (최종선정) 운영기관(중진공·지방청)이 제출한 선정명단을 전담기관(중진공)의 '공동운영위원회'를 통해 최종 지원기업(참여기업) 선정

※ 프로젝트 참여기업 우대사항

☞ 프로젝트 전용예산 : 참여기업 중 수출바우처 신청기업 간 제한경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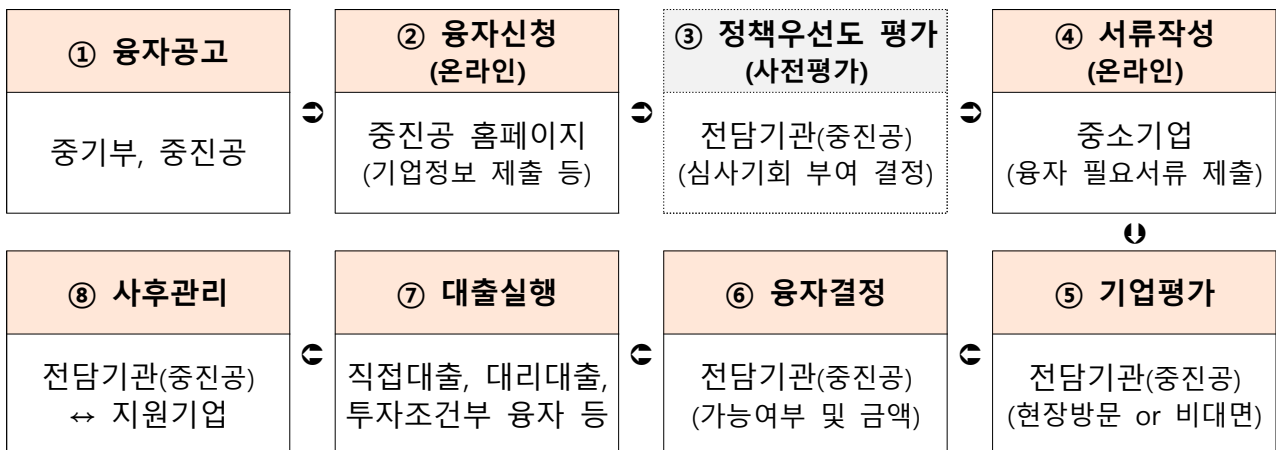
* 기업 전년도 수출실적에 따라 트랙(내수/초보/유망/성장/강소)을 선택하여 신청하고, 평가를 통해 할당예산(100억원) 한도 내 지원기업 선정

** '24년도 기준 사업내용으로 추후 '25년도 사업공고 확인 요망 必

사업3

중소기업 정책자금(용자) [정책자금]

- (사업목적)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기술·사업성 우수 중소벤처기업 대상 안정적인 자금 공급으로 경쟁력 강화 및 미래성장동력 창출
- (지원규모) '25년 약 20억원(프로젝트 투입예산 기준)
- (지원대상)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
 - * 사업별 세부 신청자격이 상이하므로 '24년 용자계획 공고 추가 확인 요망
- (지원내용) 지원기업에게 혁신창업사업화, 신시장진출지원, 신성장 기반, 재도약지원, 긴급경영안전 등의 자금을 용자 또는 이차보전
 - * 사업별 세부 지원내용이 상이하므로 '24년 용자계획 공고 추가 확인 요망
- (추진체계) 전담기관(중진공)
- (추진절차) 중소기업 정책자금(용자) 공통 추진절차



○ (신청·접수) 중진공 홈페이지(www.kosmes.or.kr)

*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시스템에서 중진공 관할 지역본·지부 선택 후 월별·지역별 사전 공지사항에서 신청일정 및 가능자금 등 확인 가능하며, 사업전환자금/구조개선전용/긴급경영(재해중소기업지원자금) 및 화재 등 대형사고 피해기업의 경우 수시 접수 가능

- **(용자신청)** 정책자금 신청이 가능한 희망기업은 정해진 기한까지 전담기관(중진공) 홈페이지를 통해 정책자금 용자신청*
 - * 「레전드 50+」 선정기업(유효기간 내)의 경우 수시접수 가능
- **(정책우선도 평가)** 지역본부·지부별 예산, 신청물량을 고려 정책우선도 평가를 통해 정책자금 심사기회 부여 여부 결정
 - * 「레전드 50+」 선정기업(유효기간 내)의 경우 정책우선도 평가 생략
- **(서류작성)** 정책자금 심사 기회가 부여된 기업은 정해진 기한 내 전담기관(중진공) 홈페이지를 통해 정책자금 용자서류 제출
- **(기업평가)** 전담기관(중진공) 현장방문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정책자금 신청기업에 대해 기업평가*(기업진단 포함) 수행
 - * 기술성, 사업성, 미래성장성, 경영능력,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기업평가등급(Rating) 산정
- **(용자결정)** 기업심사 결과 이후 일정 평가등급 또는 기준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용자 여부 결정
- **(대출실행)** 중진공 직접 대출 또는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
 - * **(중진공)** 직접대출, 성장공유형(전환권), **(취급은행)** 대리대출, 이차보전
- **(사후관리)** 부정사용 여부 점검 또는 정책자금 부실 예방을 위해 대출기업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장방문 조사 실시
 - * 대출자금 용도 외 사용 시 자금 조기회수, 용자대상 제외 등 제재조치
 - ** 재창업자금 등 일부자금 대출기업은 대출 후 1년간 사업계획 진행상황 등 점검

※ 프로젝트 참여기업 우대사항

- **(절차 간소화)** '온라인신청' 수시접수 가능 및 '정책우선도 평가' 단계 생략
 - * 온라인 용자신청(수시접수 가능) → 정책우선도 평가(생략) → 서류작성 → 기업평가 → 용자결정
- **(평가 간소화)** 기업평가 시 평가항목이 간소화된 **패스트트랙** 적용
 - * **(일반)** 29개 항목 → **(우대)** 15개 항목

사업4

스마트공장 (제조혁신 /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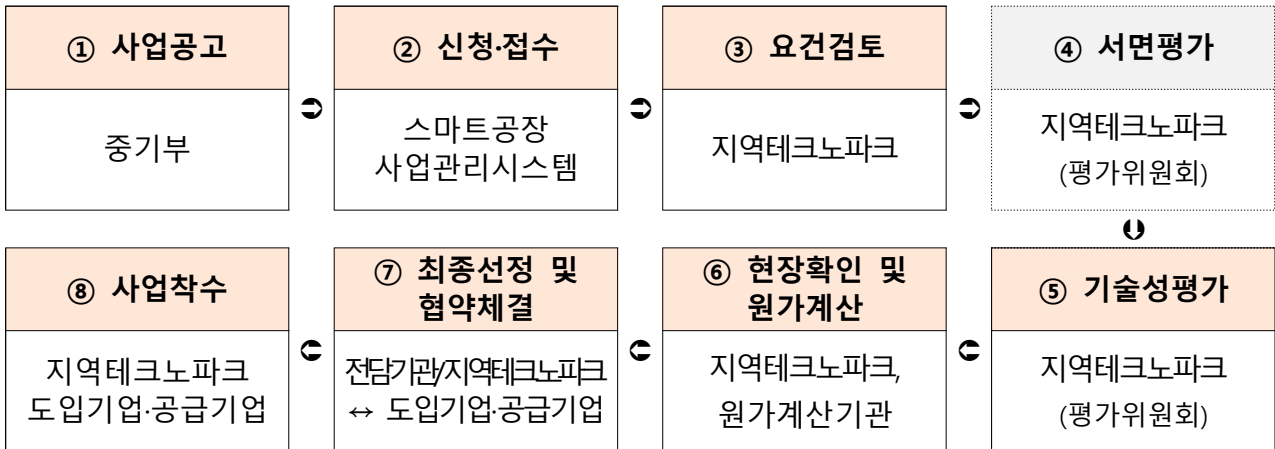
- (사업목적) 제조 중소·중견기업 대상 스마트화 기반 강화, 생산성 향상 등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을 통한 제조업 경쟁력 향상 도모
- (지원규모) '25년 약 2.3억원(프로젝트 투입예산 기준)
- (지원대상) 스마트공장 고도화가 필요한 중소·중견 제조기업
 - * 세부 신청자격은 본공고 참조
- (지원내용) 정보통신기술(ICT)로 제품의 기획-설계-제조-판매 과정을 통합하여 제조 공정을 최적화하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
 - 제품설계·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솔루션과 연동되는 자동화장비·제어기·센서 등 구축 지원
 - * 세부내용은 본공고 참조

< 내역별 세부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>

| 내역명 |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| 비고 |
|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고도화 (지역특화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(신청자격) 스마트공장 구축 예정인 제조 중소·중견 도입기업과 공급기업이 컨소시엄을 이루어 접수 - (도입기업) 국내 제조기업 중 「중소기업기본법」에 따른 중소기업 및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중견기업 - (공급기업) 스마트공장 구축 역량을 보유한 기업 및 협업체로서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의 '공급기업 Pool'에 등록된 기업 · (지원규모) 최대 5억원 이내, (사업기간) 9개월 | 정부지원금 비중 50% 내 (민간부담금 50% 이상) |

- (추진체계) 전담기관(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), 운영기관(지역테크노파크 제조혁신센터)

□ (추진절차)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주요 추진절차



- (신청·접수)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(www.smart-factory.kr)
- (서면평가)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스마트공장 구축 필요성, 지원 적정성 및 도입·공급기업 역량 등 평가
- (기술성평가) 사업계획서 및 발표 내용을 기반으로 스마트공장 구축목표·방식, 달성가능성 및 기업역량 등 대면 평가
- (현장확인 및 원가계산) 사업계획서와 현장의 일치여부, 신청 가점 등의 확인 및 사업비 계상의 적정성 검토를 통한 사업비 조정
 - 신축 예정 공장의 경우, 일부 예외 인정* 단, 공장설립(계획)승인서 및 신축공장 추진계획 검토를 통해 기간 내 구축 가능 여부 확인
 - * (예외 인정항목) 제조공장의 정상가동 여부, 보유설비 정상가동 여부
- (최종선정) 선정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지원 과제 확정

※ 프로젝트 참여기업 우대사항

- ☞ 프로젝트 전용예산 : 참여기업 간 제한경쟁을 통한 지원기업 우선 선정
- ☞ 선정절차 간소화 : '④서면평가' 단계 면제

사업5

지역주력산업육성 (사업화^{주요}, 기술지원 / 지역특화산업육성)

- (사업목적) 지역주도 지역혁신기관 역량 결집을 통한 지역특화산업 연계 이어달리기 기업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
- (지원규모) '25년 약 3.4억원(프로젝트 투입예산 기준)
- (지원대상) 비수도권 지역주력산업 분야 영위 지역중소기업
- (지원내용) 비수도권 14개 시·도 지역혁신기관을 통해 지역특화 프로젝트 참여기업 대상 사업화 등 지원(참여기업 중 지원기업 선정)

< 세부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>

| 내역명 |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|
|------------------|---|
| 지역주력 산업육성 (기업지원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신청자격) 비수도권 14개 시·도 지역주력산업 분야 영위 지역중소기업 • (지원내용) 지역중소기업 기술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기업지원 프로그램(PRE R&D) 및 사업화 연계성 강화를 위한 기업지원 프로그램(POST R&D) 지원 • (지원규모) 기업당 최대 5천만원 이내(기업부담금 10% 이상) |

< 기업지원 프로그램 주요현황 >

| 구 분 | 기업지원 프로그램 내용(예시) |
|----------|--|
| PRE R&D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기획지원 : 기술개발 기획지원 • 기술이전 : 국내외 기술이전 지원 • 기술지도 : 보유기술 고도화를 위한 전문가 기술지도 지원 • 장비지원 : 기술개발 및 테스트 장비활용 지원 • 인증지원 : 기술 및 제품 인증 지원 • 특허지원 : 국내외 특허지원(특허출원, 상표출원, 국외출원, PCT 등) |
| POST R&D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시제품제작 : 개발제품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제작 지원 • 제품고급화 : 개발제품 고급화 지원 • 디 자 인 : 제품, 포장, 디자인, 브랜드 개발 지원 • 시장조사 : 개발제품 관련 시장조사 • 마 케 팅 : 시장조사, 홍보, 전시회 참가 지원 • 컨 설 팅 : 사업화 및 경영 컨설팅 지원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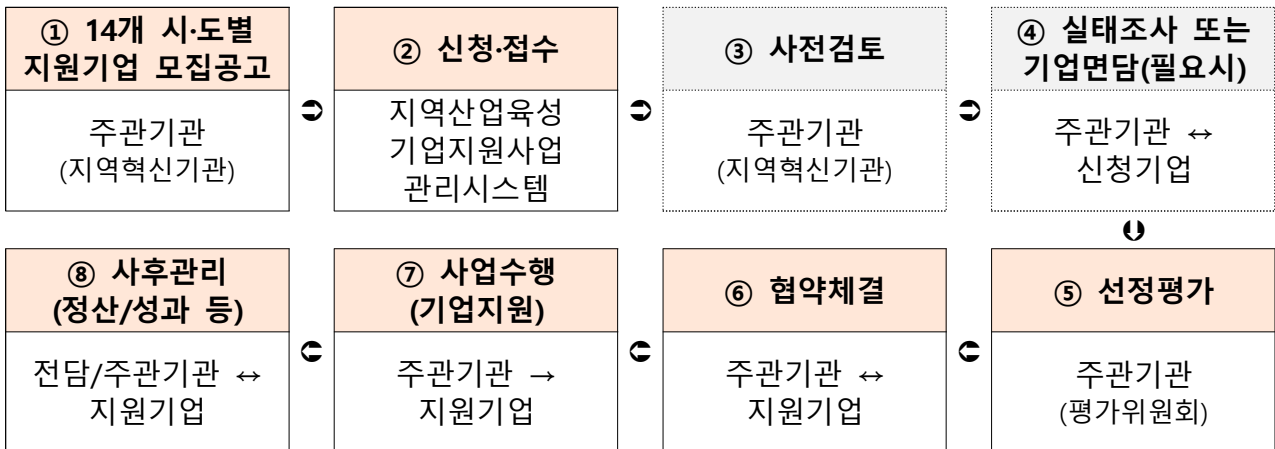
※ 기업지원 프로그램은 지역별 특성 및 지역혁신기관 제안에 따라 변동 가능

□ (추진체계) 전담기관(기정원/TIPA), 주관기관(14개 시·도 지역혁신기관)

< 지역별 프로젝트 주관기관 현황 >

| 구 분 | 기관명 | 구 분 | 기관명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|
| 부산 | (재)부산테크노파크 | 전북 | (재)전북테크노파크 |
| 대구 | (재)대구테크노파크, (재)대구기계부품연구원 | 전남 | (재)전남테크노파크 |
| 광주 | (재)광주테크노파크 | 경북 | (재)경북테크노파크 |
| 대전 | (재)대전테크노파크 | 경남 | (재)경남테크노파크 |
| 울산 | (재)울산테크노파크 | 강원 | (재)강원테크노파크 |
| 충북 | (재)충북테크노파크 | 제주 | (재)제주테크노파크 |
| 충남 | (재)충남테크노파크 | 세종 | (재)세종테크노파크 |

□ (추진절차) 지역주력산업육성(기업지원) 주요 추진절차(기존절차)



※ ③~⑤의 선정절차 및 방식은 주관기관별로 공고한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

- (신청·접수) 기업지원사업 관리시스템(www.smtech.go.kr/region/rms)
- (사전검토) 사업계획서,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신청자격 검토
- (선정평가) 사업계획서 기반 서면 또는 대면(발표)평가 진행, 지원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기업 선정

※ 프로젝트 참여기업 우대사항

- ☞ 프로젝트 전용예산 : 참여기업 간 제한경쟁을 통한 지원기업 우선 선정
- ☞ 제출서류 간소화 : 기제출된 증빙서류는 지원사업 신청시 면제 가능
- ☞ 선정절차 간소화 : 지역별 상황에 따라 ③, ④단계 면제 가능

사업6

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(R&D) (인력지원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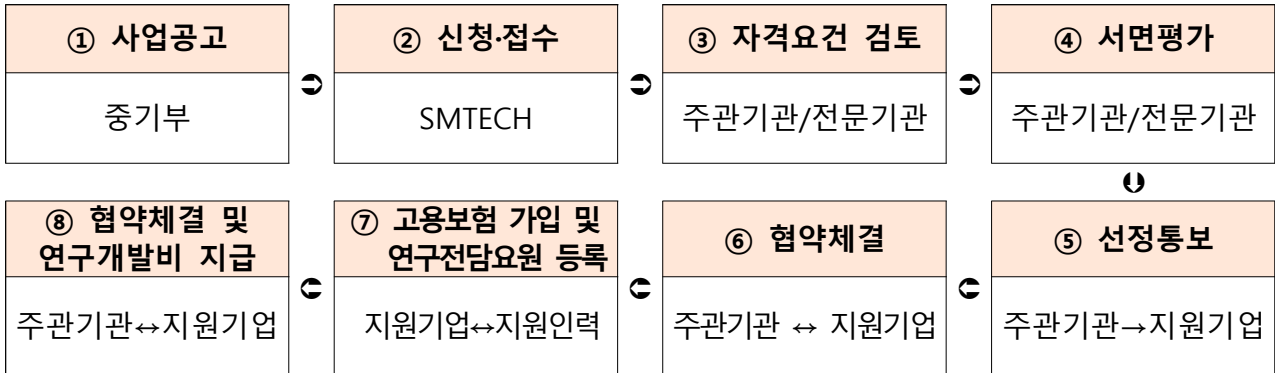
- (사업목적) 이공계 신진·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경쟁력 제고 및 청년·신중년 일자리 창출
- (지원규모) '25년 약 1.4억원(프로젝트 투입예산 기준)
- (지원대상)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
 - * 내역별 세부 신청자격 상이
- (지원내용) 기업별 1명으로 최대 3년간 연봉의 50% 지원

< 내역별 세부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>

| 내역명 |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| | | | | | |
|---|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
|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신청자격) 중소기업 및 만 39세 이하의 신진 연구인력 - (지원기업)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,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- (연구인력) 이공계 학·석·박사 학위 취득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않은 만 39세 이하 청년인력 • (지원내용) 기업별 1명으로 최대 3년간 기준연봉의 50% 지원 | | | | | | |
| | 구 분 | 기준연봉* | | | 정부지원연구개발비(정부지원금)** | | |
| | | 1년차 | 2년차 | 3년차 | 1년차 | 2년차 | 3년차 |
| | 학 사 | 3,200만원 | 3,500만원 | 3,800만원 | 1,600만원 | 1,750만원 | 1,900만원 |
| | 석 사 | 4,100만원 | 4,500만원 | 4,900만원 | 2,050만원 | 2,250만원 | 2,450만원 |
| 박 사 | 5,000만원 | 5,500만원 | 6,000만원 | 2,500만원 | 2,750만원 | 3,000만원 | |
| <p>* 기준연봉(세전금액) : ① 사업참여를 위해 채용대상자와 계약해야 하는 최소연봉(기준연봉 이상 계약필수) ② 산출식 : (기본급+월정액수당(퇴직금 제외))×12개월</p> <p>** 정부지원연구개발비 : 연봉과 관계없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고정 지원금</p> | | | | | | | |
|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신청자격) 중소기업 및 고경력 연구인력 - (지원기업)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,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- (연구인력) 이공계 학·석·박사 학위 취득 후, 기업·공공연구기관·대학 등에서 연구경력이 학사 14년, 석사 10년, 박사 5년 이상인 자 • (지원내용) 기업별 1명으로 최대 3년간 연봉의 50% 지원 | | | | | | |
| | 구분 | 연봉 | | 정부지원연구개발비(정부지원금) | | | |
| | 지원기준 | 제한 없음 | | 연봉의 50% (연간 최대 5,000만원까지 지원) | | | |
| <p>* 연봉(세전금액) : (기본급 + 월정액수당(퇴직금 제외)) × 12개월</p> | | | | | | | |

□ (추진체계) 전문기관(기정원), 주관연구개발기관(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)

□ (추진절차) 신진·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주요 추진절차



- (신청·접수)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(www.smtech.go.kr)을 통해서 온라인 신청·접수

☞ www.smtech.go.kr → 회원가입 → 로그인 → 과제신청 → 지원사업 →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(구비서류) 등록
* 온라인 입력 전 smtech 사업 공고에 첨부된 '사업별 FAQ' 확인

☞ 신청서류 : www.smtech.go.kr → 정보마당 → 알림마당 → R&D 사업공고 → 사업별 신청서류 확인 가능
* 마감일에는 온라인 접속자수가 폭주하니 가급적 마감일 1~2일전까지 신청바람

- (자격요건 검토) 신청기업 자격 및 공고내용과의 부합성, 참여제한 및 이중수혜여부,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등 자격요건 검토
- (서면평가) 기술분야별 산·학·연 전문가로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,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 등을 기반으로 서면평가
* 평가항목 : 연구개발계획서의 충실성, 연구개발역량, 지원인력 활용계획 등
- (최종선정) 서면평가 결과(종합평점, 우대가점 등)를 토대로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지원기업을 최종 확정

※ 프로젝트 참여기업 우대사항

☞ 프로젝트 전용예산 : 참여기업 간 제한경쟁을 통한 지원기업 우선 선정

사업7

기술보증기금 (보증)

- (사업목적) 담보력이 부족하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 지원

* 기술성·사업성 등 미래가치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보증서를 발급하여, 신기술 사업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

- (보증한도) 최고한도 기업당 30억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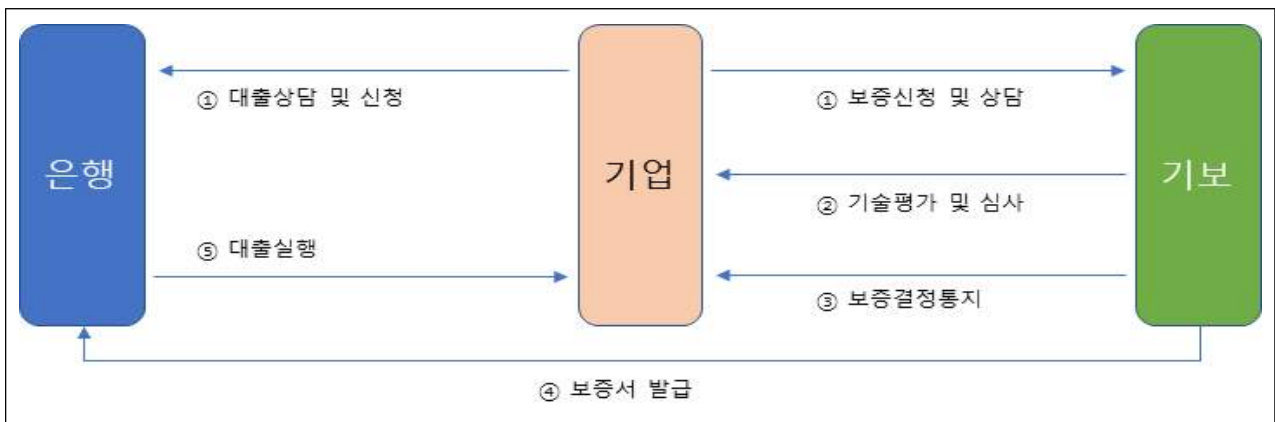
- 지원대상

- 신기술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(「기술보증기금법시행령」 제3조제1항)
-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총자산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 (「기술보증기금법시행령」 제3조제1항)

【보증취급 제한대상】

| | |
|--------|---|
| 규 모 | · 주채무계열 소속기업 ·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· KOSPI 상장기업(비효율부문 보증기업으로 운영) |
| 업 종 | · 도박게임, 사치향락 |
| 보증금지기업 | ·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자 |
| 보증제한기업 | · 보증기관이 보증채무이행후 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기업 중 보증 금지기업에 해당하지 않은 기업 · 휴업 중인 기업, 신용관리정보 보유기업 등 |

- 보증지원 체계



□ 보증진행 절차

- 보증신청부터 보증약정까지 업무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비대면·디지털화

| 단계별 | 취급자 | 주요내용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|
| 보증신청 | 신청기업 | 디지털지점 또는 영업점 신청 |
| ↓ | | |
| 보증상담 | 영업점 평가담당자 | 고객과의 상담결과에 따라 보증금지·제한 해당 여부, 기보증액, 기술사업내용 등을 검토하여 진행 여부 결정, 서류준비 등 절차안내 |
| ↓ | | |
| 접수조사자료 수집 | 영업점 평가담당자 | 기술사업계획서 등 제출 (스마트·온라인 자료 제출 시스템) |
| ↓ | | |
| 조사·기술평가 | 영업점 평가담당자 | 신청기업으로부터 수집한 자료 등을 예비검토, 현장평가 실시(기술개발 능력, 제품화 능력, 생산능력 등 확인) |
| ↓ | | |
| 심사·승인· 보증서 발급 | 영업점 심사 및 평가담당자 | 기업의 기술력, 사업전망, 경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, 승인시 보증약정 후 보증서 발급 |

□ 보증진행 절차

| 구분 | 서류 목록 | 비고 |
|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|
| 사업계획서 | 기술사업계획서 | 스마트 제출 |
| 사업자 정보 | 사업자등록증명 | 온라인 자료 제출 |
| | 법인등기사항증명 | 자체 열람 |
| | 주주명부 | 스마트 제출 |
| 부동산 정보 | 임대차계약서 | |
| | 부동산등기부등본 | 자체 열람 |
| 대표자 정보 | 주민등록표등(초)본 | 온라인 자료 제출 |
| 금융 정보 | 금융거래확인서 | 자체 열람 |
| 세무회계 정보 | 부가세과세표준증명 | 온라인 자료 제출 |
| | 표준재무제표증명 | |
| | 국세·지방세 납세증명 | |
| 기술 정보 | 산업재산권 등록원부 등 | 자체 열람 |

* **온라인 자료 제출** : 기업이 제출해야 하는 각종 서류를 기금 방문없이 디지털지점(www.kibo.or.kr)을 통해 본인의 인증서를 기반으로 해당 서류 발급기관에 자동 접속하여 전자적으로 일괄 제출하는 방식(스크래핑, 공공마이데이터 등)

** **스마트 자료 제출** : 기금 업무시스템을 통해 고객에게 필요서류를 요청하면 기업이 디지털지점에서 파일 업로드 방식으로 간편하게 서류 제출하는 방식

□ 레전드50+ 참여기업 우대지원

【 우대지원 개요 】

| 구분 | 세 부 내 용 | | |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지원대상 | 레전드50+ 프로젝트 참여기업 | | | |
| 지원구분 | 지역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(비수도권) | | | 프로젝트 분야 지원(전국) |
| | 지역주력산업영위기업 | 지방기술유망기업 *기술성 요건 충족기업 | 지역산업단지입주기업 | 신성장미래전략산업 분야 기업 |
| 우대지원 | 보증료율 0.1%p 감면 | 보증비율 90% 보증료율 0.3%p 감면 | 보증비율 90% 보증료율 0.2%p 감면 | 보증비율 95% 보증료율 0.2%p 감면 |

- (지역기술혁신) 지역산업단지 소재, 지역주력산업 등을 영위하는 혁신기술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, 시설투자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우대지원

* 보증비율 최대 90% 상향, 보증료율 최대 0.3%p 감면 등

- (프로젝트 특화) 차세대 반도체, 모빌리티 등 지역별 특화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신성장 미래전략산업 분야 성장유망기업을 선별하여 우대지원

* 보증비율 최대 95% 상향, 보증료율 최대 0.2%p 감면 등

<신성장 미래전략산업 분야>

| 5대 분야 | 18대 세부산업 |
|------------|--|
| 첨단제조 | ▲ 우주항공, 해양 ▲ 차세대 반도체 ▲ 차세대 디스플레이 ▲ 차세대 배터리 ▲ 소재/부품/장비 |
| 에너지 | ▲ 차세대 원자력 ▲ 수소 에너지 ▲ 미래 에너지 |
| 디지털·통신·서비스 | ▲ 차세대 통신, 네트워크 ▲ 사이버 보안 ▲ 양자기술 ▲ 지식서비스 |
| 자동화 | ▲ AI, 빅데이터 ▲ 차세대 모빌리티 ▲ 로봇 |
| 바이오 | ▲ 레드 바이오 ▲ 그린, 화이트 바이오 ▲ 디지털 헬스케어 |

- (신청·접수)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(www.kibo.or.kr) 및 전국 영업점을 통한 온라인 및 현장 신청·접수

□ 문의처

- 기술보증기금 : ☎ 1544-1120 / www.kibo.or.kr

별첨2

지원사업별 신청자격 요건 <개별요건>

| 사업명 | 내역명 | (개별 4) 지원사업별 신청자격 요건 <공통요건은 「별지 제8호」 참조>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|
|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| 일반 바우처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신청자격) 제조업 영위 중소기업(3년 평균 매출액 제한 조건 없음) 1)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[별표1] 중소기업 기준 분류기호 "C" 업종 적용<참고 1> 2)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[별표3] 소기업 기준 분류기호 "C" 업종 적용<참고 2> 3)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(평균매출액등의 산정) 적용 |
| 중소기업 정책자금 (용자) | 5대 분야 2개 용도 21개 사업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신청자격) 용자계획 공고에서 정하는 사업별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* 중소기업 정책자금 용자계획 공고 내용 참고 |
| 수출 바우처 | 내수기업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신청자격) 전년도 수출액 0~1천불 미만인 중소기업 * 추가사항 : 간접수출만 있는 경우 희망시 내수기업으로 신청 가능 |
| | 수출 초보기업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신청자격) 전년도 수출액 1천불 이상 10만불 미만인 중소기업 |
| | 수출 유망기업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신청자격) 전년도 수출액 10만불 이상 100만불 미만인 중소기업 |
| | 수출 성장기업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신청자격) 전년도 수출액 100만불 이상 500만불 미만인 중소기업 |
| | 수출 강소기업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신청자격) 전년도 수출액 500만불 이상인 중소기업 |
| 창업중심 대학 | 창업기업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신청자격)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3호에 따른 창업기업으로 중소기업 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|
| 스마트 공장 | 고도화1 (지역특화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신청자격) 스마트공장 구축 예정 제조 중소·중견 도입기업과 공급기업 컨소 시엄 - (도입기업) 국내 제조기업 중 「중소기업기본법」에 따른 중소기업 및 「중견기업 성 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중견기업 - (공급기업) 스마트공장 구축 역량을 보유한 기업 및 협업체로서 스마트공장 사업 관리시스템의 '공급기업 Pool'에 등록된 기업 |
| 지역특화 산업육성 (기업지원) | 지역주력 산업육성 (기업지원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신청자격) 비수도권 14개 시도 소재 지역주력산업 영위 중소기업 |
|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(R&D) |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신청자격) 중소기업의 만 39세 이하 신진 연구인력 - (지원기업)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,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 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- (연구인력) 이공계 학·석·박사 학위 취득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않은 만 39세 이 하 청년인력 |
| |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신청자격) 중소기업의 고경력 연구인력 - (지원기업)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,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 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- (연구인력) 이공계 학·석·박사 학위 취득 후, 기업·공공연구기관·대학 등에서 연구경 력이 학사 14년, 석사 10년, 박사 5년 이상인 자 |
| 기술보증 기금 | 기술보증 기금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신청자격)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신기술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 및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총자산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 |

별첨3

지원사업별 지원제외 대상 <개별요건>

| 사업구분 | (개별 7) 지원사업별 지원제외 대상 <공통요건은 「별지 제8호」 참조>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<p>중소기업 혁신바우처</p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,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·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운영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또는 특수관계 기업 · 신청한 분야에 대하여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수행기업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· 신청 프로그램의 내용이 동 사업 및 타부처 정부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내용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 · 신청 시 동 사업을 수행(바우처 잔액 보유) 중인 기업 (예외 : '23년 1차, 2차 사업에 선정되어 동 사업을 수행 중인 업체는 신청 가능) · 최근 5년간 동 사업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· 대표자/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(개별 6) |
| <p>중소기업 정책자금 (융자)</p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<참고 3>을 영위하는 기업 · 「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」에 따른 소상공인 (예외 : ①제조업, 혁신성장-초격차-신산업, 그린 분야를 영위하는 소상공인, ② 사회적경제기업(예비)사회적기업, 협동조합, 마을기업, 자활기업] 중 소상공인, ③협동화 사업 추진주체인 협동조합 중 소상공인) · 최근 3년 이내 사업장 임대 등 정책자금 지원시설의 목적 외 사용으로 융자신청이 제한된 기업 ·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 <참고 4>을 초과하는 기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예외① : 업력 7년 미만, 「소득세법」에 의한 간편장부대상 사업자 - 예외② : 「중소기업협동조합」 상의 협동조합 - 예외③ :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 증가율이 동업종 평균 2배를 초과하는 중소기업 시설투자금액, 매출액 대비 R&D 투자비율이 1.5% 이상인 기업의 R&D 투자금액 등은 융자제한 부채비율 산정 시 제외) · 중진공 지정 부실징후기업 또는 업력 5년 초과 기업 중 아래에 해당하는 한계기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대상① : 2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잠식인 기업 - 대상② : 3년 연속 이자보상배(비)율 1.0 미만, 3년 연속 영업활동 현금흐름(-)인 기업(예외: 유형자산, R&D투자액 모두 전년대비 2.5% 이상 증가) - 대상③ :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하위(예외: 재창업자금은 신청 가능) · 기업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예외① : 신청연도가 다른 경우 - 예외② : 실질기업주 변경 등 경영상 중대한 변동이 있는 경우(추가 1회에 한함) - 예외③ : 다른 자금 평가탈락 후, 재도약지원/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· 아래에 해당하는 우량기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대상① :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, 코스닥시장 상장기업, 「자본시장법」에 의한 신용평가회사 BB등급 이상 기업(예외 : 코스닥 기술특례상장기업은 상장 3년까지 예외) - 대상② :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상위 등급(CR1)(예외: 업력 3년 미만 기업, 최근 결산연도 자산총계 10억원 미만 소자산 기업, 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상 협동조합, 이차보전 신청 기업은 예외) - 대상③ : 최근 재무제표 기준 자본총계 200억원 또는 자산총계 700억원 초과 기업 |

사업구분 (개별 7) 지원사업별 지원제외 대상 <공통요건은 「별지 제8호」 참조>

- 정부,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용자, 보증 지원 실적이 최근 5년간 합계 2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
 - 예외① : (신규지원 및 과거 실적산정 예외 자금, 용자방식) 신시장진출지원, 신성장기, 투융자복합금융, 재도약지원, 긴급경영안정, 성장공유형, 이차보전
 - 예외② : (과거실적 산정예외) 보증서부 정책자금 지원의 보증실적과 매출채권보험
 - 예외③ : (신규지원 예외대상) 소재·부품/장비 강소기업 100·스타트업100·경쟁력 강화위원회 추천 기업
- 중진공 정책자금 누적지원 금액이 운전자금 기준으로 25억원을 초과하는 기업
 - 예외① : (자금) 긴급경영안정자금, 투융자복합금융, 스케일업금융
 - 예외② : (용자방식) 성장공유형, 이차보전
-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
 - 예외① : (신규지원 및 과거 실적산정 예외 자금, 용도, 용자방식, 대상) 긴급경영안정자금, 투융자복합금융, 스케일업금융, 창업기반지원자금(대환대출), 시설자금, 성장공유형, 이차보전, 소재·부품·장비 강소기업 100·스타트업 100·경쟁력위원회 추천기업, 브랜드K 인증기업,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
 - 예외② : (신규지원 시 예외 대상) 최근 1년간 수출실적 30만 달러 이상 기업

- 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
- 중기부, 산업부, 농식품부, 해수부, 지자체 등 수출바우처사업(통합형)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어 협약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
-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에 수행기관으로 참여 중인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기업
 - 경영사항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실질경영주 또는 대표자가 동일한 기업
 - 부정행위 등으로 수출바우처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기업의 대표자가 운영하는 별도 사업체도 참여기업 신청불가
- 동일 법인인 경우에는 복수 사업자로 신청 및 선정불가
-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영위 기업

**수출
바우처**

| 업종분류 | 품목코드 | 수출바우처사업 지원제외 업종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조업 | 33402中 |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|
| | 33409中 |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|
| 도매 및 소매업 | 46102中 | 담배 중개업 |
| | 46331, 3 / 4722中 | 주류, 담배 도매업 |
| 숙박 및 음식점업 | 5621 | 주점업 |
| 게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 | 5821中 |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|
|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| 9124 | 갬블링 및 베팅업 |

* 업종 분류는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,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업종으로 함

- 단순 유통기업, 무역상사인 경우

-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(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)의 업종을 영위하거나, 영위하고자 하는 자 <참고 5>
- 사업연도가 '24년인 중소벤처기업부, 타 중앙정부·공공기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*에 선정되어 수행 중인 자(기업) ※ 중단(중단처분, 중도포기자) 포함

| 사업구분 | (개별 7) 지원사업별 지원제외 대상 <공통요건은 「별지 제8호」 참조>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: 「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」 내 중앙부처가 운영하는 '사업화' 유형 창업지원사업 중 창업 아이템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,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비, 마케팅비 등 사업화 소요 자금을 (예비)창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 ** 지자체 지원사업은 협약 시작·종료일에 관계없이 선정 가능 • 중소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(기업) •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계좌(사업비 계좌)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(기업) * 「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의2제1항, 가상통화 관련 자금 세탁방지 |
| 스마트 공장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과제 신청일 기준 '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사업'을 수행 중인 기업 • 유흥·향락업, 숙박·음식점,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영위 기업 •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사업에서 참여제한 중인 기업 |
| 지역특화 산업육성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면서 최근 회계연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1,000%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50% 이하인 기업 •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•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"의견거절" 또는 "부적정" |
|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(R&D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및 신청요건에 부적합한 경우 • 신청과제가 기술개발사업의 지원목적 및 공고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• 기(既) 개발/기(既) 지원 여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-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용과 유사한 경우 - 신청기업이 기 생산·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•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연구개발기관(주관, 공동, 위탁) 및 각 기관의 대표자,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, 성과 실적 입력(장비 구입실적 등), 회수금, 환수금 및 제재부가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*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의무사항 불이행을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*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(공사)이 위탁연구개발기관인 경우 연구책임자에 대해서만 적용 ㉓ 연구개발기관(주관, 공동, 위탁) 및 각 기관의 대표자(공동대표, 각자대표 포함),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|
| 기술보증 기금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주채무계열 소속기업 •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• KOSPI 상장기업(비효율부문 보증기업으로 운영) • 도박게임, 사치향락 업종 영위기업 • 보증금지기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자 • 보증제한기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보증기관이 보증채무이행후 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기업 중 보증금지기업에 해당하지 않은 기업 - 휴업 중인 기업, 신용관리정보 보유기업 등 |

별첨4

참여기업 평가항목 계량지표(성장성·혁신성) 세부 배점기준

□ 성장성 지표(10점 만점)

| 구 분 | 매출 | 고용 | 영업이익 | 배점 조건 | 배 점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
| 최근 3년('21~'23) 연평균 성장률 (CAGR*) | 2% 이상 | 1% 이상 | 1% 이상 | 3개 지표 모두 충족 시 | 10 |
| | | | | 3개 지표 중 2개 지표 충족 시 | 8 |
| | | | | 3개 지표 중 1개 지표 충족 시 | 5 |
| | | | | 해당없음 | 1 |

* (참고) 최근 3년간 연평균 성장률(CAGR) 계산산식: $(2023\text{년도 값}/2021\text{년도 값})^{(1/2)}-1$

* 매출액 및 영업이익은 신청기업이 제출한 표준재무제표증명원 기준이며, 고용은 신청기업이 제출한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명부 기준임

□ 혁신성 지표(10점 만점)

| 구 분 | 배점 조건 | 배 점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|
| 최근 3년('21~'23) 평균 R&D 투자비율* | 5% 이상 | 5 |
| | 4% 이상 ~ 5% 미만 | 4 |
| | 3% 이상 ~ 4% 미만 | 3 |
| | 2% 이상 ~ 3% 미만 | 2 |
| | 1% 이상 ~ 2% 미만 | 1 |
| | 1% 미만 | - |
| 최근 3년('21~'23) 특허 출원 및 등록 건수 | 2건 이상 | 5 |
| | 1건 이상 | 3 |
| | 1건 미만 | - |

* 연구개발비 투자확인서 상의 최근 3년('21~'23) R&D 투자비율의 산술평균 값

참고1

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[별표1]

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[별표 1] <개정 2017. 10. 17.>

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(제3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)

|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| 분류기호 | 규모 기준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1. 의복,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| C14 | 평균매출액등 1,500억원 이하 |
| 2. 가죽, 가방 및 신발 제조업 | C15 | |
| 3. 펄프,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| C17 | |
| 4. 1차 금속 제조업 | C24 | |
| 5. 전기장비 제조업 | C28 | |
| 6. 가구 제조업 | C32 | |
| 7. 농업, 임업 및 어업 | A | 평균매출액등 1,000억원 이하 |
| 8. 광업 | B | |
| 9. 식료품 제조업 | C10 | |
| 10. 담배 제조업 | C12 | |
| 11. 섬유제품 제조업(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) | C13 | |
| 12.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(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) | C16 | |
| 13. 코크스,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| C19 | |
| 14.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(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) | C20 | |
| 15.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| C22 | |
| 16. 금속가공제품 제조업(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) | C25 | |
| 17. 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| C26 | |
| 18.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| C29 | |
| 19.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| C30 | |
| 20.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| C31 | |
| 21. 전기, 가스,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| D |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|
| 22. 수도업 | E36 | |
| 23. 건설업 | F | |
| 24. 도매 및 소매업 | G | |
| 25. 음료 제조업 | C11 | |
| 26.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| C18 | |
| 27.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| C21 | |
| 28.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| C23 | |
| 29. 의료, 정밀,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| C27 | |
| 30. 그 밖의 제품 제조업 | C33 | |

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(제3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)

|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| 분류기호 | 규모 기준 |
|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31. 수도, 하수 및 폐기물 처리, 원료재생업 (수도업은 제외한다) | E (E36 제외) | |
| 32. 운수 및 창고업 | H | |
| 33. 정보통신업 | J | |
| 34.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| C34 | 평균매출액등 600억원 이하 |
| 35. 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| M | |
| 36. 사업시설관리,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(임 대업은 제외한다) | N (N76 제외) | |
| 37.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| Q | |
| 38. 예술,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| R | |
| 39. 수리(修理)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| S | 평균매출액등 400억원 이하 |
| 40. 숙박 및 음식점업 | I | |
| 41. 금융 및 보험업 | K | |
| 42. 부동산업 | L | |
| 43. 임대업 | N76 | |
| 44. 교육 서비스업 | P | |

비고

1.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「통계법」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.
2. 위 표 제19호 및 제20호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(C30393),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(C31202)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,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(C31322)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,500억원 이하로 한다.

참고2

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[별표3]

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[별표 3] <개정 2017. 10. 17.>

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(제8조제1항 관련)

|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| 분류기호 | 규모 기준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1. 식료품 제조업 | C10 |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| |
| 2. 음료 제조업 | C11 | | |
| 3. 의복,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| C14 | | |
| 4. 가죽, 가방 및 신발 제조업 | C15 | | |
| 5. 코크스,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| C19 | | |
| 6.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(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) | C20 | | |
| 7.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| C21 | | |
| 8.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| C23 | | |
| 9. 1차 금속 제조업 | C24 | | |
| 10. 금속가공제품 제조업(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) | C25 | | |
| 11. 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| C26 | | |
| 12. 전기장비 제조업 | C28 | | |
| 13.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| C29 | | |
| 14.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| C30 | | |
| 15. 가구 제조업 | C32 | | |
| 16. 전기, 가스,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| D | |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|
| 17. 수도업 | E36 | | |
| 18. 농업, 임업 및 어업 | A | | |
| 19. 광업 | B | | |
| 20. 담배 제조업 | C12 | | |
| 21. 섬유제품 제조업(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) | C13 | | |
| 22.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(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) | C16 | | |
| 23. 펄프,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| C17 | | |
| 24.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| C18 | | |
| 25. 고무제품,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| C22 | | |
| 26. 의료, 정밀,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| C27 | | |
| 27.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| C31 | | |
| 28. 그 밖의 제품 제조업 | C33 | | |
| 29. 건설업 | F | | |

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(제8조제1항 관련)

|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| 분류기호 | 규모 기준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30. 운수 및 창고업 | H | |
| 31. 금융 및 보험업 | K | |
| 32. 도매 및 소매업 | G |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|
| 33. 정보통신업 | J | |
| 34. 수도, 하수 및 폐기물 처리, 원료재생업(수도업은 제외한다) | E (E36 제외) |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|
| 35. 부동산업 | L | |
| 36. 전문·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| M | |
| 37. 사업시설관리,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| N | |
| 38. 예술,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| R | |
| 39.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| C34 |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|
| 40. 숙박 및 음식점업 | I | |
| 41. 교육 서비스업 | P | |
| 42.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| Q | |
| 43. 수리(修理)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| S | |

비고

-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「통계법」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.
-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(C31202)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,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(C31322)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.

참고3

중소기업 정책자금 - 용자제외 대상업종 및 예외

※ 본 자료는 2023년 기준 참고자료로, 「2024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용자계획 공고」 시 변경된 내용이 있을 경우 해당 기준을 적용

□ 용자제외 대상 업종

| 업종 분류 | 산업분류코드 (KSIC) | 용자제외 업종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|
| 제조업 | 33402 中 |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|
| | 33409 中 | 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|
| 건설업 | 41 ~ 42 | 건설업(단, 산업 생산시설 종합 건설업(41225), 환경설비 건설업(41224), 조경 건설업(41226), 배관 및 냉·난방 공사업(42201), 건물용 기계·장비 설치 공사업(42202), 방음, 방진 및 내화 공사업(42203), 소방시설 공사업(42204), 전기 및 통신공사업(423)은 지원가능 업종) |
| 도매 및 소매업 | 46102 中 | 담배 중개업 |
| | 46~47 中 | 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중개 및 도소매업 |
| | 46331, 3 | 사행성, 사치성 상품 중개업 및 도소매업, 주류, 담배 소매업 |
| | 47859 中 | 주류, 담배 도매업(단, 주류 중개업 면허보유 기업은 지원 가능) |
| | 47993 中 | 성인용품 판매점 |
| 숙박 및 음식점업 | 5621 | 다단계 방문판매 |
| 정보통신업 | 58 中 | 주점업 |
| | 59142 | 경마, 경륜, 경정 등 사행성 잡지 발행업,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|
| 정보서비스업 | 63999 中 |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|
| 금융 및 보험업 | 64 ~ 66 |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,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매매 및 중개업(63999-1) |
| 부동산업 | 68 | 금융 및 보험업(단,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핀테크 기업 중 그 외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(66199)은 지원 가능) |
| 전문서비스업 | 711~2 | 부동산업 |
| | 7151 | 법무,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|
| 수의업 | 731 | 회사본부 |
| 사업 지원 서비스업 | 75330 | 수의업 |
| | 75999 中 |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|
| 임대업 | 76390 中 |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또는 판매업 |
| 공공행정,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| 84 | 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|
| | 851~854 | 공공행정,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|
| 교육서비스업 | 855~856 中 | 초·중·고등 교육기관 및 특수학교 |
| | 86 | 일반교과 및 입시 교육 |
| 보건업 | 91113 | 보건업 (단, 사회적경제기업은 지원 가능) |
| | 9124 |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|
| | 91291 |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|
| 협회 및 단체 | 94 | 무도장 운영업 |
| | 96992 | 협회 및 단체 (단, 「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」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가능) |
| 기타 개인 서비스업 | 97 ~ 98 |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|
| 가구 내 고용 및 자가소비 생산활동 | 99 |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별도로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 |
| 국제 및 외국기관 | | 국제 및 외국기관 |

- *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, 향락 등 불건전 업종, 기타 국민보건,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,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업종은 용자 제외
- ** 「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」에 따른 소상공인은 용자 제외

□ 용자제외 업종 운용의 예외

- 제조업 영위기업 : 소상공인 지원 허용
- 혁신성장분야, 초격차·신산업분야, 그린분야 : 소상공인 지원 허용
- 사회적경제기업 : 소상공인, 보건업(86) 영위기업 지원 허용
 - * 예비사회적기업, 사회적기업, 협동조합, 마을기업, 자활기업
- 협동화사업 추진주체인 협동조합 : 소상공인 지원 허용
 - * (추진주체) 협동화사업을 주도하여 추진하는 중소기업자(중소기업 협동화 기준)
-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기업 : 아래 업종은 소상공인 지원 허용

• 호텔업(55101) 중 관광숙박업, 기타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(55109),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(85614), 자동차 임대업(76110),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(91210), 기타 오락장 운영업(91229), 수상오락 서비스업(9123), 산업용 세탁업(96911), 세탁물공급업(96913)

참고4

중소기업 정책자금 -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

※ 본 자료는 2023년 기준 참고자료로, 「2024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」 시 변경된 내용이 있을 경우 해당 기준을 적용

| 번호 | 업종(KSIC-10) | 평균부채비율(%) | 제한부채비율(%) | 사업전환 융자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|
| 1 | A01(농업) | 178.0 | 500.0 | 1000.0 |
| 2 | A03(어업) | 252.9 | 500.0 | 1000.0 |
| 3 | B(광업) | 167.4 | 500.0 | 1000.0 |
| 4 | C(제조업) | 121.9 | 365.7 | 731.4 |
| 5 | C10(식료품) | 150.7 | 452.1 | 904.2 |
| 6 | C11(음료) | 136.3 | 408.9 | 817.8 |
| 7 | C13(섬유제품(의복제외)) | 131.9 | 395.7 | 791.4 |
| 8 | C14(의복,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) | 133.0 | 399.0 | 798.0 |
| 9 | C15(가죽, 가방 및 신발) | 121.5 | 364.5 | 729.0 |
| 10 | C16(목재 및 나무제품(가구 제외)) | 159.2 | 477.6 | 955.2 |
| 11 | C17(펄프, 종이 및 종이제품) | 119.1 | 357.3 | 714.6 |
| 12 | C18(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) | 127.7 | 383.1 | 766.2 |
| 13 | C19(코크스, 연탄 및 석유정제품) | 130.7 | 392.1 | 784.2 |
| 14 | C20(화학물질 및 화학제품(의약품 제외)) | 98.5 | 295.5 | 591.0 |
| 15 | C21(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) | 69.3 | 207.9 | 415.8 |
| 16 | C22(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) | 120.3 | 360.9 | 721.8 |
| 17 | C23(비금속 광물제품) | 99.6 | 298.8 | 597.6 |
| 18 | C24(1차 금속) | 134.6 | 403.8 | 807.6 |
| 19 | C25(금속가공제품(기계 및 가구 제외)) | 138.0 | 414.0 | 828.0 |
| 20 | C26(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) | 102.1 | 306.3 | 612.6 |
| 21 | C27(의료, 정밀, 광학기기 및 시계) | 91.7 | 275.1 | 550.2 |
| 22 | C28(전기장비) | 108.3 | 324.9 | 649.8 |
| 23 | C29(기타 기계 및 장비) | 118.5 | 355.5 | 711.0 |
| 24 | C30(자동차 및 트레일러) | 161.6 | 484.8 | 969.6 |
| 25 | C31(기타 운송장비) | 313.7 | 500.0 | 1000.0 |
| 26 | C32(가구) | 164.8 | 494.4 | 988.8 |
| 27 | C33(기타 제품 제조업) | 120.2 | 360.3 | 721.2 |
| 28 | C34(산업용기계 및 장비수리업) | 165.2 | 495.6 | 991.2 |
| 29 | D35(전기, 가스,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) | 520.1 | 500.0 | 1000.0 |
| 30 | E(하수·폐기물 처리,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) | 120.9 | 362.7 | 725.4 |
| 31 | F(건설업) | 107.9 | 323.7 | 647.4 |
| 32 | G(도매 및 소매업) | 136.8 | 410.4 | 820.8 |
| 33 | H(운수 및 창고업) | 174.2 | 500.0 | 1000.0 |
| 34 | I(숙박 및 음식점업) | 381.0 | 500.0 | 1000.0 |
| 35 | J(정보통신업) | 119.6 | 358.8 | 717.6 |
| 36 | L(부동산업) | 445.1 | 500.0 | 1000.0 |
| 37 | M(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) | 125.5 | 376.5 | 753.0 |
| 38 | N(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) | 203.6 | 500.0 | 1000.0 |
| 39 | P(교육 서비스업) | 163.4 | 490.2 | 980.4 |
| 40 | R(예술,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) | 224.2 | 500.0 | 1000.0 |
| 41 | 기타산업 | 194.5 | 500.0 | 1000.0 |

- 1) 업종별 산업분류코드 중 하위코드 항목이 있을 경우 우선 적용
- 2) 제한부채비율은 최소 200%, 최대 500% 이내 (부채비율=부채총계/자본총계)
- 3)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(21년) 의한 최근 3개년 가중평균 부채비율

참고5**창업사업화 지원사업 - 지원제외 업종**

※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(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)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(기업)

| 구분 | 대상업종 | 코드번호 세세분류 |
|----|---|--------------|
| 1 | 일반유흥주점업 | 56211 |
| 2 | 무도유흥주점업 | 56212 |
| 3 |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| 91249 |
| 4 |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| - |

* 대상업종 세부사항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(통계청, kssc.kostat.go.kr) 참고